

대구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가단103881(본소), 2018가단114805(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명의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 종결 2018. 10. 25.

판결 선고 2018. 12.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9.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인수하고, C자동차번호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 3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2017. 9. 19.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C 번호판을 인도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나. F자동차매매단지 내 'G' 소속의 중고자동차 판매원인 H은 같은 일을 하는 I으로 부터 일명 'J'이라는 사람(이하 'J'이라 표시한다)이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니 생각 있으면 연락해보라는 말을 듣고 J에게 연락하였고, J은 자신을 캐피탈회사의 채권팀 소속직원이라고 소개했다.

다. 피고는 2017. 8.경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인 'K'에 이 사건 차량을 4,800만원에 매물로 등록하였는데, J이 전화를 걸어와 "중고 차량 가격이 원래 4,800만 원인데 3,3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자, 그 대신 계약이 성사되고 받은 3,300만 원을 다시 우리회사 계좌로 넣어 준다면, 최종적으로 4,800만 원을 다시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J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라. H은 2017. 9. 17. 오전 J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에 매수할 것인지 문의를 받고, 원고 소속 딜러인 L, M에게 물어 3,500만 원~3,600만 원정도이면 매수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이를 J에게 전하였고, J은 "매매대금을 3,3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은 자신에게 수수료로 달라"고 하였다.

마. 원고의 위임을 받은 H, L, M(이하 'H 등'이라 한다)은 2017. 9. 18. 오후 1시경까지 피고의 영업장으로 차량을 보러 가기로 하고, J으로부터 차량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

바. H 등은 2017. 9. 18. 피고를 만나 J을 통하여 왔다고 자신들을 소개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3,300만 원으로 정한 차량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사. 2017. 9. 18. 14:08:53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 3,300만 원이 송금되었다. J은 H에게 같은 날 14:11경 피고가 돈을 송금할 계좌번호(N 명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고, 피고는 H이 받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같은 날 14:12:05 N의 계좌로 3,300만 원 전부를 송금해주었다.

아. 그 후 피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J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않자 사기라고 판단하고 H 등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H 등은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가져가고, 위 차량 양도계약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17. 9. 19.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자. 1) 피고는 H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였으나,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J으로부터 속아 거래가 시작된 점과 J에게 차량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의자가 자신도 사기를 당하였다며 차량 열쇠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 피고는 J, 원고 및 N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J에 대하여는 "일명 '삼각사기' 형태의 본건 범행을 주도한 자이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하고, 원고 및 N에 대하여는 "J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한 정황이 확인되지않고, 공모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한편 N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즉시 대출기관 또는 대출업자로 착오하고 대면한 대출브로커인 O에게 2017. 9. 18.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량 인도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측 사람인 J, H의 요청으로 N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주었으므로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행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원고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모두 완료된 이후 J과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N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J이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N의 계좌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J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거나 H의 요청에 따라 N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표현대리 주장 포함)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국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고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2. 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8. 2. 9.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금 지급일인 2017.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상법 제54조, 민법 제548조 제2항)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원상회복에 따라 지급해야 할 법정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17668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 명의의 소유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나 자동차번호판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반환할 매매대금에 관한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으로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N의 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은 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반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대하여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차량 자동차번호판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량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J에게 속아 J과 체결한 개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N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길연

